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 등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도심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2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대상 조정 및 추가(안 제4조의2)
 -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기준 변경
 - 1회 2시간 무료 2시간이후 50% 감면 → 50% 감면
 - 저공해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안 제7조)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개선 및 위탁대행료 산정 기준 규정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안 별표 7)

-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하여 1/2 범위내 강화

구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			원룸형 주택	
	60㎡ 초과		60㎡ 이하	30㎡ 이상	30㎡ 미만
	85㎡ 초과	85㎡ 이하			
당초	75㎡	95㎡	세대당 0.7대	0.6	0.5
변경	75㎡	95㎡	세대당 1대	0.9	0.7

○ 대규모 단지조성사업 노외주차장 설치 규모(안 제13조의2)

- 사업부지 면적의 0.6% → 1.2% 상향 조정

○ 주차장법 위임사항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규제 정비

-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삭제(안 제12조)
- 기계식주차장 설치율 제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 총 주차대수의 30% 초과 설치 금지
 - 총 주차대수 20대 이하 설치 금지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 조정(안 제15조)
 - 사업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 노상 및 노외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확보대수 규정(안 제18조)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 과징금의 처분 중 가산금 징수 항목 삭제(안 제26조)
- 부설주차장 부지의 '주차장' 지목 요건 삭제(안 별표 7)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저공해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 규모 조정 등을 통해 주차장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